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의결사항

재 해 구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취소, 모집·배분·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등과 협의 중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구호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제20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취소, 모집 및 배분·사용내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4(구호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취소, 모집 및 배분·사용내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난구호과	
연 락 처	044-205-5337